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000 (국토교통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공사의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사 1인의 수시 감리 체계로는 건축공사 현장의 모든 공정(토목, 기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 및 시공관리를 할 수 있도록 상주감리 대상 확대 및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분야 전담 감리를 별도로 배치하는 등 감리체계를 보완하고, 우천·결빙 시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등의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한편, 주거시설에 근접하여 공동육아와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 주택형태를 갖춘 공동육아나눔터와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안 제19조제5항)

공사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관리를 통해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감리와 겹침하지 않고 독립성을 확보하여 안전관리분야에 전담하여 감리하도록 공사기간 동안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건축사보를

별도로 배치하도록 함.

나. 건축공사 시공관리 강화를 위해 상주감리 확대(안 제19조제5항제2호)
건축사 1인의 수시 감리체계로는 건축공사 현장의 모든 공정(토목, 기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현장 중심의 시공관리를 통해 건축공사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상주감리 대상을 현행 '5개층, 바닥면적 합계가 3천㎡ 이상' 건축공사에서 '2개층, 바닥면적 합계가 2천㎡ 이상'으로 확대함.

다. 감리업무 내실화를 위해 허가권자 지정 감리대상 조정(안 제19조의2)
건축법 개정('20.4.7)에 따라 허가권자 지정감리제도의 목적인 감리업무의 독립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신기술 적용 건축물 및 역량 있는 건축사의 증가에 대비하여 신기술의 경우 건설기술 신기술 중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적용하는 신기술로 한정하고, 역량 있는 건축사의 경우 최근 5년이 내 건축설계 공모에 입상한 자로 한정함.

라. 신재생에너지 관련시설 설치 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 완화(안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 5)신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공급·이용하는 관련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등을 설치하는 경우 폭 2미터까지 건축면적을 완화함.

마. 지하주차장 경사로 바닥면적 산정 완화(안 제119조제1항제3호가목 신설)

우천·결빙 시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함.

바. 사회변화를 반영한 건축물의 용도 정비(안 별표 1)

최근 인구감소 등에 대비 출산·육아 및 커뮤니티 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주거시설에 근접한 육아 또는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 주택형태를 갖춘 공동육아나눔터와 작은도서관(1층에 한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함.

사. 조경기준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출기준 명확화(안 별표15)

조경면적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혼선이 없도록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0645호, 2020. 4. 28.) 제정 시 유지 관리 관련규정에 포함되어 함께 삭제된 산출기준을 다시 명확히 함.

아. 현장관리인 현장이탈에 대한 과태료 강화(안 별표16)

현장관리인의 업무 내실화 및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장관리인이 공정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공사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위반 시 30만원으로 상향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0. 00.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3062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9조제5항 본문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를 “건축분야 건축사보와 건설안전분야 건축사보(안전감리원이라 한다) 각각”로, 같은 항 제2호 중 “5개”를 “2개”로, “3천”을 “2천”으로 한다.

제19조의2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제2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적용하는 신기술을 말한다.

⑦ 법제2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란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날부터 최근 5년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공모전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를 말한다.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또는 법”을 “이 법 또는 이 법”으로 한다.

제115조의2제1항제5호 중 “법 또는”을 “이 법 또는 이”로, “제9호까지 및 제13호”를 “제9호까지”로 한다.

제115조의3제2항제4호 중 “법 또는 법”을 “이 법 또는 이 법”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2) 중 “돌출차양”를 “처마 또는 돌출차양”로 하고, 같은 가목에 5)를 6)으로 하며, 같은 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신재생에너지를 공급·이용하는 관련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해당 시설을 설치한 부분의 처마, 차양 등에 한정한다) :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6) 중 “보관함”을 “보관시설”로, “수거함”을 “수거시설”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보관함”을 “보관시설”로 하며, 같은 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별표 1 제1호 본문 중 “지역아동센터”를 “지역아동센터·공동육아나눔터·작은도서관(1층에 한정한다)”로 하고, 제2호 본문 중 “지역아동센터”를 “지역아동센터·공동육아나눔터·작은도서관(1층에 한정한다)”로 한다.

같은 별표1 제4호너목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시설. 다만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인 경우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위

탁처리하는 것

같은 별표 1 제10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별표 15 제13호의 이행강제금의 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건축물	해당 법조문	이행강제금의 금액
3.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42조	시가표준액(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별표 16 제2호 중 라목의 과태료 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라. 법 제24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공사 현장을 이탈한 경우	법 제113조 제3항	20	30	5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및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
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6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
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통령령 제3062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9조(공사감리) ① ~ ④ (생략)	제19조(공사감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각 호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중 <u>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u>	⑤ ----- ----- ----- ----- ----- ----- ----- ----- ----- ----- ----- ----- ----- ----- ----- ----- ----- ----- ----- <u>건축분야 건축사보와 건설안전분야 건축사보(안전감리원이라 한다) 각각</u> ---- ----- -----

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생략)

2. 연속된 5개 층(지하층을 포함한다)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3.·4. (생략)

⑥ ~ ⑩ (생략)

제19조의2(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① ~ ⑤ (생략)

<신설>

<신설>

-----.

-----.

1. (현행과 같음)

2. ---- 2개 -----

---- 2천 -----

3.·4. (현행과 같음)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25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적용하는 신기술을 말한다.

⑦ 법 제25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란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날부터 최근 5년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

제113조(위법·부당한 건축위원회
회의 심의에 대한 조치) ① 국
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12조에 따른 조사 및 의견
청취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 방
법 또는 결과가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
(이하 이 조에서 “건축법규등”
이라 한다)에 위반되거나 부당
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 ④ (생략)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 4. (생략)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11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
의 공모전에 입상한 실적이 있
는 건축사를 말한다.

⑧ (현행 제6항과 같음)

제113조(위법·부당한 건축위원회
회의 심의에 대한 조치) ① ---
----- 이 법 또는 이 법 -----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 이 법 또는 이 -----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
호의2, 제4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
하는 경우

②·③ (생략)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생략)

② 법 제80조제2항에서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
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1. ~ 3. (생략)

4.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
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생략)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
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생략)

----- 제9호까지-----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이 법 또는 이 법-----

5. (현행과 같음)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

1. (현행과 같음)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생략)

2)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

2. -----

-----.

-----.

가. -----

-----.

1) (현행과 같음)

2) -----

조로 된 돌출차양이 설치
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
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
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
결된 경우에는 6미터 이
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
리를 말한다)

3) ~ 4) (생 략)

<신 설>

5) (생 략)

나. (생 략)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

--- 처마 또는 돌출차양

3) ~ 4) (현행과 같음)

5) 신재생에너지를 공급 ·

이용하는 관련시설의 설
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
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법」 제17조에 따른 제로
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
은 건축물(해당 시설을
설치한 부분의 처마, 차
양 등에 한정한다):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6) (현행 5)와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

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5) (생 략)

6)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
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
거함을 말한다. 이하 같
다)

7) ~ 12) (생 략)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
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
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
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 라. (생 략)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
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
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바. ~ 파. (생 략)

<신 설>

-----.

1) ~ 5) (현행과 같음)

6) ----- 보관시설-----
----- 수
거시설-----
--

7) ~ 12) (현행과 같음)

3. -----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마. -----

----- 보관시설-----

-----.

바. ~ 파. (현행과 같음)

하.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
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

4. ~ 10. (생략) ② · ③ (생략)	<u>한다.</u> 4. ~ 10.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761

<참 고> 「별표1」 신·구조문 대비표(시행령 제3조의5 관련)

[illegible]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 라. (생략)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 거. (생략)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생략) 2) 「대기환경보전법」, 「<u>물환경보전법</u>」 또는 「<u>소음·진동관리법</u>」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로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더·러. (생략) 10. 교육연구시설 가. ~ 다. (생략) 라. <u>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u>	----- ----- -----. 가. ~ 라. (현행과 같음)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 거. (현행과 같음) 너. ----- ----- ----- ----- ----- ----- 1) (현행과 같음) 2)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u>소음·진동관리법</u>」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시설. 다만 「<u>물환경보전법</u>」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인 경우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더·러. (현행과 같음) 10. 교육연구시설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u>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u>
---	--

<u>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한다)</u> 마. ~ 바. (생략) 나. ~ 다. (생략)	<u>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 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 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은 제외한다)</u> 마. ~ 바. (현행과 같음) 나. ~ 다. (현행과 같음)
---	--